

환경관리 질의응답



회원사 및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분들의 환경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자주 질의·문의·상담되는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종료신고 여부

Q 도로공사 현장에서 폐콘크리트를 재활용하여 성토재로 활용하기 위해 파쇄시설을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장 여건상 일정한 량이 도달하여야 시설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량이 수집되어야만 시설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물량이 되지 않아 2~3개월 후 다시 운영코자 합니다. 이러할 때 기존의 신고사항은 종료신고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연속적인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변경신고 등을 아 니하여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설치 기준에 의한 방음벽 및 기타시설(비산먼지 억제시 설등)은 고정상태로 둔채 일시중지기간 파쇄시설(이동식파 쇠기)만 다른 현장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A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 치·운영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완료한 경우 「폐 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 사용종료·폐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폐 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완료한 경우가 아니라면 폐기물치 리시설 사용종료·폐쇄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사용종 료·폐쇄신고 전까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은 당해 건설공 사현장에 설치되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처분

(하수처리장 미유입지역에서 하수처리장 유입시설)

Q 개인하수처리시설(60톤/일)이 하수종말처리장 미유입지역 으로 되어있어 준공완료에 따른 시료채취를 하여 수질검 사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아 행정처분(개선명령)을 하였습

니다. 행정처분 통지를 받은 건물주가 과태료 부과 10일전 에 하수도과로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최종방 류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된다는 유입확인서와 같 이 의견서를 제출 현지출장 확인한 결과 오수 차집관으로 연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최종방류수가 유입처리 됨을 확 인하였습니다. 하수도과에서는 하수처리 미유입지역임에 도 2007. 8. 2일 차집관로 연결 후 2007. 9. 3일 배수설 비 준공을 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토록 하였습 니다. 하수도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1항 제3호에 의하 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 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법적용이 타당한지요? 이러 할 경우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에 대해서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공하 수처리장으로서의 유입처리이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 른 개선명령은 취소를 하여야 할 것이며 과태료 부과는 곤 란하다 하겠습니다.

출산휴가중 인력대체에 대해서...

Q 환경방지시설업체에 근무하고 있고 대기방지시설업 기술 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번에 출산휴가(3개 월)와 육아휴직(12개월)을 받고자 하는데 휴가와 휴직동안 에 인력을 대체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를 올립니다.

A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대하여는 당해 영업의 정상

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체기술인력을 선임하고 방지사설업 변경등록을 이행하여야 하며, 선임된 전담기술인력은 당해 영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으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상근·종사하여야 함에 따라 이 경우 사업자가 정상적인 영업수행 여건 등을 판단하여 미리 대체 기술인력을 선임하고 방지사설업 변경등록을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독물 보관시설 관련 질의

Q 당사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적합한 유독물 보관창고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창고의 용량부족으로 유독물창고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증설되는 유독물 창고에는 유독물만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화학물질도 같이 보관하려고 합니다.(출입구 등에는 유독물 표지판 등의 법규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함) 증설되는 유독물 창고에 유독물과 일반화학물질을 구분하여 함께 보관할수 있는지요?
(유독물보관구역은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외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설치할 예정)

A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2 「유독물의 관리기준」에 의거 종류가 다른 유독물을 같은 보관시설안에 보관하는 경우 칸막이 등으로 구분·보관하여야 하며, 유독물과 다른 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을 함께 보관하는 경우에도 구분·보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동법의 관리기준을 준수 할 수 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또한, 유독물과 음식물 또는 농·수·축산물은 같은 시설안에 함께 보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폐기물 위탁 처리 계약 관련 문의

Q 폐기물 위탁 처리업체와의 계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① 폐기물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체 및 최종처리업체 계약은 개별적으로 가능한지요?
예) 배출자+수집/운반업체, 배출자+최종처리업체
② 수집/운반업체에 문의해보니 위탁 처리 계약은 3자 계약으로 갑(배출자)+을(수집/운반업체)+병(최종처리업체)으로 된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③ 2항의 경우 갑이 을업체에 병의 처리비까지 포함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경우 을업체에 부가세가 병의 처리비까지 포함하여 부과 되는지요?

④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관련 법률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폐기물배출자, 수집·운반업자, 최종처리업자와의 폐기물처리계약은 폐기물 운반에 대한 계약(운반자),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계약(처리자)을 각각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및 폐기물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의 운반은 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므로 폐기물 운반비는 운반업자에게, 처리비는 처리업자에게 각각 지불하여야 합니다.

수질사업장 변경방법

Q 안성에 있는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 폐수 처리량이 200톤이 안되는 4종사업장에 속해있습니다. 앞으로 폐수 처리량이 늘어나 3종사업장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 방법과 구비서류등 필요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처리시설은 기존 그대로 사용할꺼구요 4종에서 3종으로 변경 신고하는법 좀 알려주세요

A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구비서류는 신고필증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즉, 폐수발생량이 증가되는 원인관련 서류와 추가로 발생하는 폐수의 처리방법 등을 제시하시고 신고는 해당 시청(환경 담당부서)에 하시면 됩니다.